

	실병관리청	보	도 침	밝고	. 자 료	
배 포 일	2020. 11. 12	담당-	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팀 장	홍 정	익	전	<u></u> 화	043-719-9370	
담 당 자	진 여 원,	최 은 경	[전	-	043-719-936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1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7,942명**(해외유입 4,036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38명으로 총 25,404명(90.9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2,05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3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87명(치명률 1.74%)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1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28	52	2	2	2	6	2	0	0	34	6	0	9	0	8	1	3	1
누계	23,906	6,014	546	7,109	956	464	412	120	64	5,040	302	156	598	123	160	1,520	281	41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11.1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구분	합계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5	0	7	2	1	4	1	9	6	4	11
누계	4,036	26	1,998	734	1,142	118	18	1,885	2,151	2,237	1,799
	4,030	(0.6%)	(49.6%)	(18.2%)	(28.3%)	(2.9%)	(0.4%)	(46.7%)	(53.3%)	(55.4%)	(44.6%)

* 아시아(중국 외) : 우즈베키스탄 1명, 네팔 1명, 러시아 2명(2명), 미얀마 2명(2명), 일본 1명, 유럽 : 이탈리아 1명, 크로아티아 1명 (1명), 아메리카 : 미국 1명(1명), 아프리카: 이집트 3명(3명), 케냐 1명(1명), 오세아니아 : 호주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환자**	사망자
11.11.(수) 0시 기준	25,266	2,046	49	487
11.12.(목) 0시 기준	25,404	2,051	53	487
변동	(+)138	(+)5	(+)4	0

- * 11월 11일 0시부터 11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11월 12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참조
 -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 (**구분**) 군무원(지표환자 포함) 6명, 군인 5명, 가족 3명
 - **서울 동작구 카페**와 관련하여 11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 (구분) 종사자(지표환자 포함) 2명, 방문자 7명 (지역) 서울 2명, 경기 4명, 인천 3명
 - 서울 강서구 보험사와 관련하여 격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6명이다.

		보험사 관	·련	추가전파			
구분	계	직원 (지표환자 포함)	그 가솔		지인 등 이용자 및 지인 가격		
전일	43	15	7	2	12	7	
금일	46(+3)	15	8(+1)	2	12	9(+2)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하여 격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구분	계	이용자 (지표환자포함)	종사자	방문자	가족 및 지인 등
전일	38	22	7	1	8
금일	41(+3)	24(+2)	7	1	9(+1)









○ 서울 강남구 역삼역과 관련하여 격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구분	계	직원 (지표환자포함)	지인	기족
전일	17	3	5	9
금일	22(+5)	3	8(+3)	11(+2)

○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관련하여 격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8명이다.

			럭키사우나		음식점 모임			
구분	계	방문자 (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i>가</i> 족 및 자인	방문자	종사자	가족 등	
전일	44	13	4	12	3	-	12	
금일	48(+4)	14(+1)	4	15(+3)	3	-	12	

○ 경기도 포천시 추산초등학교와 관련하여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그ㅂ	계	학	생	종시	추가 전파	
구분	711	1학년	6학년	교사	직원	가족
전일	20	5	3	3	1	8
금일	22(+2)	5	3	3	1	10(+2)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3명이다.

구분	계	간병인 및 직원	환자 및 이용자	가족 및 지인
안양시 일가족	4	-	-	4
남천병원	24(+1)	3	11	10(+1)
어르신세상주간보호센터	34	8	13	13
오산메디컬재활요양병원	33	6	2	-
아이사랑어린이집 관련	18	2	2	14
금호노인요양원	30(+9)	7(+2)	20(+4)	3(+3)
총계	143(+10)	26(+2)	73(+4)	44(+4)









○ 경남 사천시 부부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	계	부부 (지표환자 포함)	경로당	경로당 외 추기전파			
TE	71		o±6	가족	지인	기타	
전일	14	2	7	1	1	3	
금일	16(+2)	2	7	1	2(+1)	4(+1*)	

- * (지역) 경남 15명(+2), 서울 1명
- 대구 동구 오솔길다방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	계	운영자	방문자	다방 외 추가 전파		
下正	71	(지표환자 포함)	8단시	가족	지인	
11.9 기준	10	2	6	2	-	
금일	11(+1)	2	6	2	1(+1)	

- * (지역) 대구 10명, 경북 1명(+1)
- 대구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와 관련하여 11월 9일 이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 자는 총 40명*이다.

구분	계	교인	교회 외 추가 전파							
TE	711	(지표환자 포함)	가족	지인	직장 동료	기타				
11.9 기준	37	28	1	3	2	3				
금일	40(+3)	30(+2)	2(+1)	3	2	3				

- * (지역) 대구 34명(+3), 경북 1명, 인천 1명, 전북 4명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주간**(10월 30일 0시~11월 12일 0시)의 **환자 발생 동향** 및 **방역관리 상황**을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 국내 환자 발생은 서울 35.5%, 경기 28.2%, 충남 8.4%, 강원 3.7%, 경남 3.6% 순으로 발생하여, 기존 수도권 지역 중심 발생







외에도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경남 창원 등 지역에서 상당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감염경로별로 살펴보면 지역 집단발생 35.5%, 확진자 접촉 20.2%, 해외유입 및 관련 20.2%, 감염경로 조사 중 13.6%, 병원・요양병원 등 10.5% 순으로 지역사회 소규모 유행 중심으로 발생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다.
- 또한 확진자의 연령대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 확진자 중 20대 및 30대의 구성비가 지난 9월에는 22% 수준이었으나, 최근 점차 증가하여 11월 잠정 분석 결과 31.4%로 확인됐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및 혈장치료제의 임상** 시험 진행 경과를 안내하였다.
 - **항체치료제는 경증** 확진자 대상 **1상** 임상시험(8.25일), **경증과 중증** 확진자 대상 **임상 2/3상**(9.17일), 예방 목적 **임상3상**(10.8일)이 현재 진행 중으로,
 - 경증 1상 임상시험은 최근 마무리되어 약제 안전성과 바이러스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다.
 - 임상 2/3상 임상시험에서는 경증-중등증 확진자 300명 모집에 현재 국내 13명을 포함하여 총 75명이 등록되었으며, 예방 3상 임상시험은 초기 상황으로 환자 모집 중이다.









- **혈장치료제는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며, 11월 3일 기준 60명 모집에 **11명이 등록**됐으며, 많은 확진자가 등록될 수 있도록 **임상기관을 6개에서 12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혈장치료제의 치료목적 사용이 5건 승인되어 진행 중이고, 혈장제제를 확보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혈장을 모집하고 있다.
 - * 치료목적사용 승인제도 : 다른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확진자 모집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확진자와 임상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점점 추워진 날씨로 실내 생활이 증가 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 내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께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에 취약한 고위 험군이 있는 요양시설 등은 감염예방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실내에서는 수시로 환기·소독하시고, 시설이용자 및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반드시 실천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렸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3.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처분 기준
 - 4.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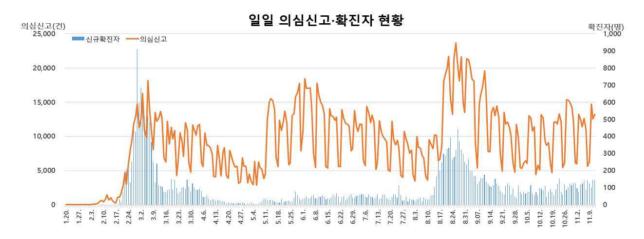
① 일일 확진자 현황 (11.12. 0시 기준, 27,942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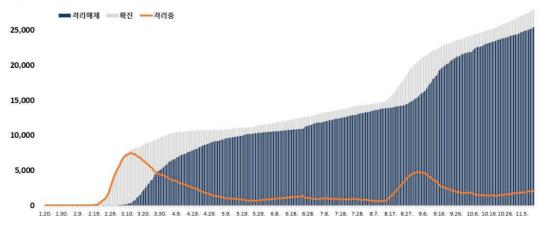
 구분	총계 ^{**}		결과 역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TE	5/1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급시 중	크지 등 2
11.11.(수) 0시 기준	2,736,534	27,799	25,266	2,046	487	28,688	2,680,047
11.12.(목) 0시 기준	2,749,772	27,942	25,404	2,051	487	29,284	2,692,546
변동	+13,238	+143	+138	+5	0	+596	+12,499

- * 11월 11일 0시부터 11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일일 누적 격리중·격리 해제자 현황





30,000







② **지역별 확진자 현황** (11.12. 0시 기준, 27,942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TICH	금일	신규	さいて レーツ	(0/)	인구10만명당
지역	국내발생	해외유입	확진자누계	(%)	발생률 [*]
서울	52	1	6,505	(23.28)	66.83
부산	2	0	608	(2.18)	17.82
대구	2	1	7,201	(25.77)	295.55
인천	2	0	1,073	(3.84)	36.30
광주	6	0	534	(1.91)	36.66
대전	2	0	448	(1.60)	30.39
울산	0	1	167	(0.60)	14.56
세종	0	0	82	(0.29)	23.95
경기	34	1	5,815	(20.81)	43.89
강원	6	0	334	(1.20)	21.68
충북	0	1	206	(0.74)	12.88
충남	9	0	674	(2.41)	31.76
전북	0	0	172	(0.62)	9.46
전남	8	0	207	(0.74)	11.10
경북	1	0	1,596	(5.71)	59.94
경남	3	1	374	(1.34)	11.13
제주	1	0	61	(0.22)	9.09
검역	0	9	1,885	(6.75)	-
총합계	128	15	27,942	(100)	53.89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검 역
격리 중	2,051	650	31	43	40	21	10	6	0	544	65	23	135	9	26	12	62	2	372
격리해제	25,404	5,776	562	6,962	1,022	510	432	159	82	5,170	266	180	531	162	179	1,527	312	59	1,513
사망	487	79	15	196	11	3	6	2	0	101	3		8	1	2	57	0	0	0
합계	27,942	6,505	608	7,201	1,073	534	448	167	82	5,815	334	206	674	172	207	1,596	374	61	1,885

^{* 11}월 11일 0시부터 11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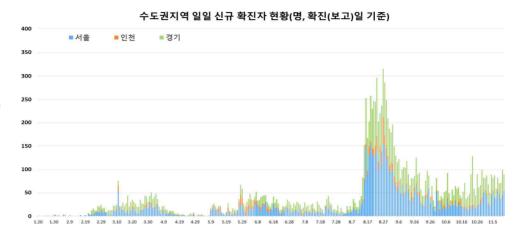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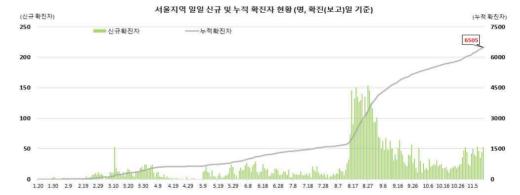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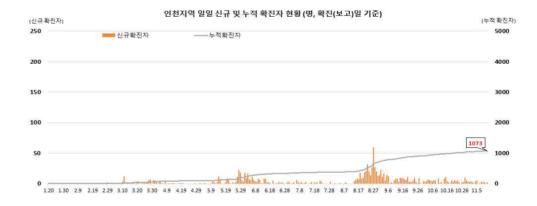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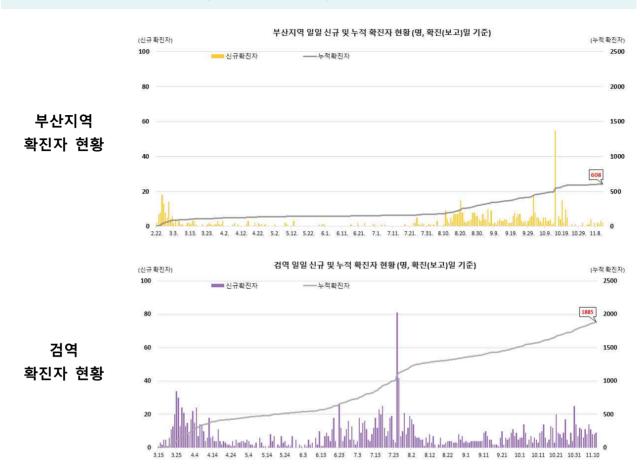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③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1.12. 0시 기준, 27,942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u> </u>		(70)	46/17/1	(70)	발생률*
	계	143	(100)	27,942	(100)	53.89
성별	남성	77	(53.85)	13,085	(46.83)	50.59
02	여성	66	(46.15)	14,857	(53.17)	57.18
	80세 이상	4	(2.80)	1,216	(4.35)	64.03
	70-79	9	(6.29)	2,245	(8.03)	62.24
	60-69	15	(10.49)	4,416	(15.80)	69.61
	50-59	25	(17.48)	5,095	(18.23)	58.79
연령	40-49	22	(15.38)	3,782	(13.54)	45.08
	30-39	23	(16.08)	3,519	(12.59)	49.95
	20-29	26	(18.18)	5,383	(19.26)	79.09
	10-19	13	(9.09)	1,545	(5.53)	31.27
	0-9	6	(4.20)	741	(2.65)	17.86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4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1.12.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7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0	(0.00)	487	(100)	1.74
 성별	남성	0	(0.00)	257	(52.77)	1.96
0 2	여성	0	(0.00)	230	(47.23)	1.55
	80세 이상	0	(0.00)	246	(50.51)	20.23
	70-79	0	(0.00)	157	(32.24)	6.99
	60-69	0	(0.00)	56	(11.50)	1.27
	50-59	0	(0.00)	22	(4.52)	0.43
연령	40-49	0	(0.00)	4	(0.82)	0.11
	30-39	0	(0.00)	2	(0.41)	0.06
	20-29	0	(0.00)	0	(0.00)	0.00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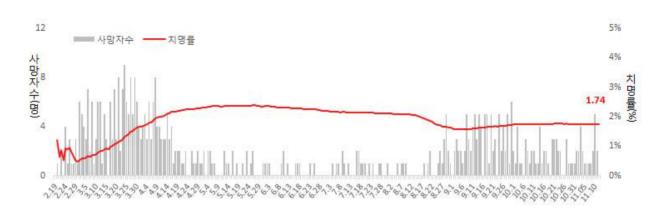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0.30	10.31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1.10	11.11	11.12
계	51	54	51	49	52	53	51	50	53	58	57	54	49	53

구분	위중증	(%)
л	53	(100.0)
80세 이상	9	(17.0)
70-79세	25	(47.2)
60-69세	14	(26.4)
50-59세	3	(5.7)
40-49세	2	(3.8)
30-39세	0	(0.0)
20-29세	0	(0.0)
10-19세	0	(0.0)
0-9세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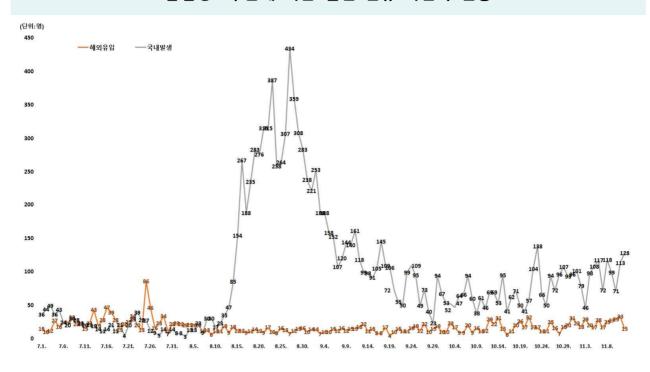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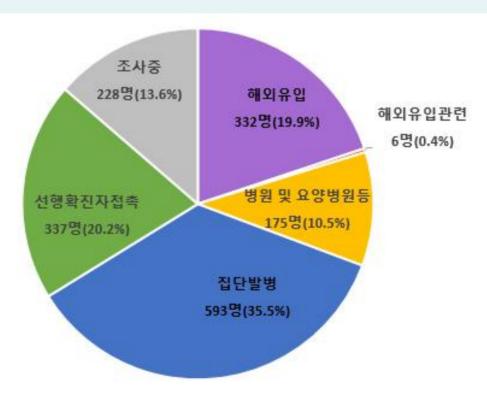


⑤ 감염경로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10.30일 0시~11.12일 0시까지 신고된 1,671명) 감염경로 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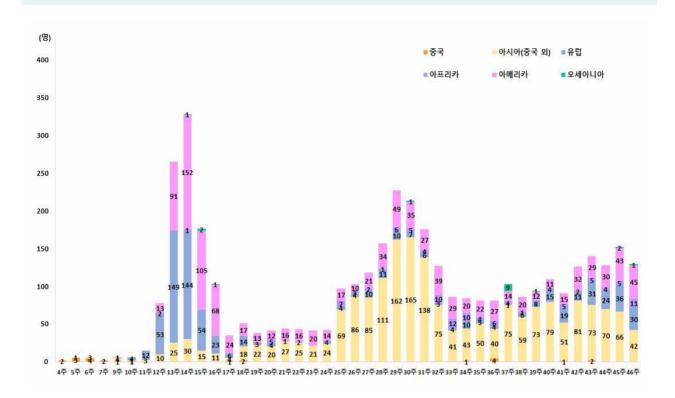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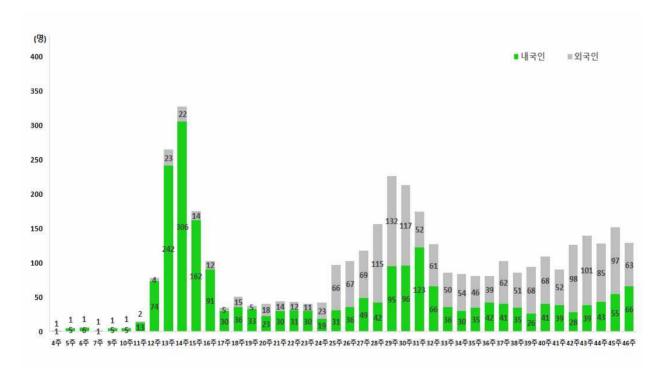






<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확진환지		명, %)					
지역	누계	해외 유입	소계	집단 빌 신천지 관 련	생 관련 집단 발병	해외유입 관련	기타*	쥤사조	신규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서울	6,505	491	3,591	8	3,506	77	1,265	1,158	53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부산	608	62	427	12	360	55	60	59	2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총남 2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대구	7,201	92	5,419	4,512	903	4	935	755	3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인천	1,073	117	702	2	691	9	136	118	2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광주	534	70	395	9	380	6	36	33	6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대전	448	36	270	2	268	0	90	52	2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울산	167	47	84	16	64	4	21	15	1	* 광추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세종	82	18	50	1	48	1	10	4	0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경기	5,815	775	3,401	29	3,304	68	917	722	35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 관련(135명) * 경기 100명, 서울 34명, 경남 1명 • 수도권 중학교/헬스장 관련(74명)	
강원	334	32	213	17	195	1	50	39	6	* 서울 49명, 경기 21명, 광주 2명 등 •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51명) * 서울 45명, 경기 3명, 세종 3명	
충북	206	50	94	6	81	7	39	23	1	• 서울 강서구 보험사 관련(45명) * 서울 29명, 경기 15명, 인천 1명	
충남	674	76	404	0	403	1	114	80	9	• 충남 아산 직장 관련(42명) • 충남 35명, 경기 4명, 서울 3명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41명)	
전북	172	49	78	1	77	0	28	17	0	↑ * 서울 39명, 경기 2명 • 대구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 관련(39명) * 대구 33명, 전북 4명, 경북 1명 등	
전남	207	47	115	1	112	2	30	15	8	• 충남 천안 신부동 콜센터 관련(37명) * 충남 35명, 경기 1명, 서울 1명 • 경기 양주시 섬유회사 관련(30명)	
경북	1,596	76	1,178	565	613	0	200	142	1	* 경기 30명 • 서울 음악 교습 관련(28명)	
경남	374	93	232	32	197	3	23	26	4	* 서울 23명, 경기 5명 • 경기 포천시 추산초등학교 관련(19명) * 경기 18명, 서울 1명	
제주	61	20	15	0	14	1	19	7	1	• 서울 강남구 역삼역 관련(19명) * 서울 16명, 경기 2명, 경남 1명 • 대구 동구 오솔길다방 관련(11명)	
검역	1,885	1,885	0	0	0	0	0	0	9	* 대구 10명, 경북 1명 • 서울 송파구 시장 관련(11명) • 서울 8명, 경기 3명	
하게	27,942	4,036	16,668	5,213	11,216	239	3,973	3,265	1/12	•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 관련(10명) * 서울 10명	
합계	(%)	(14.4)	(59.7)	(18.7)	(40.1)	(0.9)	(14.2)	(11.7)	143	• 전남 순천시 은행 관련(8명) * 전남 6명, 광주 2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4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누적 박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발생자 수*
미국	9,990,620	236,727	122,231	685	2.37	3,035.74
인도	8,636,011	127,571	44,281	512	1.48	630.96
브라질	5,675,032	162,628	10,917	231	2.87	2,671.86
러시아	1,836,960	31,593	19,851	432	1.72	1,276.55
프랑스	1,794,717	41,885	22,166	1,220	2.33	2,740.03
스페인	1,398,613	39,756	7,552	76	2.84	3,014.25
아르헨티나	1,250,499	33,907	8,317	347	2.71	2,772.73
영국	1,233,779	49,770	20,412	532	4.03	1,841.46
콜롬비아	1,149,063	32,974	5,176	183	2.87	2,307.36
이탈리아	995,463	42,330	35,090	580	4.25	1,681.53
멕시코	972,785	95,225	4,960	198	9.79	735.29
페루	923,527	34,943	1,194	64	3.78	2,807.07
남아프리카공화국	740,254	19,951	1,729	106	2.70	1,274.10
독일	705,687	11,767	18,487	261	1.67	856.42
이란	703,288	39,202	10,339	453	5.57	849.38
폴란드	593,592	8,375	25,454	330	1.41	1,562.08
칠레	523,907	14,611	1,028	23	2.79	2,797.15
벨기에	507,380	13,561	3	28	2.67	4,373.97
이라크	505,310	11,432	3,577	52	2.26	1,250.77
우크라이나	489,808	8,947	10,611	191	1.83	1,118.28
인도네시아	444,348	14,761	3,779	72	3.32	164.88
체코	429,880	5,323	9,005	249	1.24	4,055.47
방글라데시	423,620	6,108	1,699	16	1.44	262.47
네덜란드	418,911	8,131	4,664	98	1.94	2,449.77
스웨덴**	162,240	6,057	-	-	3.73	1,606.34
카자흐스탄**	157,261	2,306		-	1.47	845.49
일본	110,156	1,841	1,173	12	1.67	86.81
중국	86,299	4,634	15	0	5.37	6.08
우즈베키스탄	69,173	589	146	1	0.85	210.89
키르기스스탄	64,360	1,188	400	3	1.85	1,038.06
싱가포르	58,073	28	9	0	0.05	984.29
말레이시아	42,050	300	869	6	0.71	129.38
호주	27,678	907	10	0	3.28	110.27
태국	3,847	60	3	0	1.56	5.55
베트남	1,226	35	10	0	2.85	1.26
대한민국	27,942	487	143	0	1.74	53.90

^{*} 국가별 총 인구 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처분 기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	행 단계	전국 유항	!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화·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실내 전체, 2m 유지가 되지 (

^{*}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 확대

□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시설 전·후 비교

구분	종전		변경 (11.13일부터 적용)
	▶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제한시설 12종 시설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23종
	(기 안내*)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Rightarrow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 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적용 시설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 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 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대중교통	\Rightarrow	<u> </u>
	▶ 집회·시위장	\Rightarrow	<u> </u>
	▶ 의료기관 <u>,<신설></u>	\Rightarrow	▶ 의료기관 <u>, 약국</u>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Rightarrow	▶ <좌동>
	▶ <신설>	\Rightarrow	▶ 종교시설
	▶ <신설>	\Rightarrow	▶실내 스포츠 경기장
	<u></u> <신설>	\Rightarrow	<u>▶ 고위험 사업장</u> * <u>콜센터</u> , 유통물류센터
	<u>▶ <신설></u>	\Rightarrow	▶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10.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10.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처분 기준 전·후 비교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
-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구분	종전		변경 (11.13일부터 적용*)
행정 명령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의 집회·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 * 운영 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의무 포함		지 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의2에 의한 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의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조치 ★ 필요시 별도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가능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	위반 시 제80조(벌칙) 제7호 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고발 조치 및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uparrow	위반 시 • (관리자운영자) 제83조(과태료) 제2항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이용자) 제83조(과태료) 제4항에 의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차) 10만원, (2차 이상) 10만원

* 단, 마스크 착용 외 다른 방역수칙 위반은 11.7일부터 적용(11.1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참조)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 · 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 · 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궈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첚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